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2. 23.(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21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22-09-040)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2021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2021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21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대상 방송사업자의 2021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대상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보도·홈쇼핑 PP 등 총 154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평가기준입니다. 평가 영역은 내용·편성·운영영역으로 나누어서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2021년도 평가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운영영역의 장애인·여성 고용 항목 평가척도에 “여성간부직 고용비율”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홈쇼핑 사업자의 피해구제 유인 제고를 위해 운영영역의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 항목의 평가척도를 “구제조치 건수”에서 “피해구제 비율”로 개선하였습니다. 평가 배점은 중앙지상파TV 700점, 종편 600점, 보도PP·홈쇼핑PP 500점입니다. 평가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의 활용입니다. 방송평가 결과는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40%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3월부터 방송사 대상 설명회 및 제출자료 접수, 그리고 8~9월경에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최종 방통위에서 방송평가 결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2월에 평가결과를 의결하였지만 올해부터는 10월 말로 2개월 단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평가가 항상 1년 전 것을 그다음 해 말에 해서 시기가 늦게 되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0월 말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일단 10월 말로 당긴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업자들의 자료제출이나 중간 정산들이 있어서 그것이 늦어진다는 것인데,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방송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방송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시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길 수 있는 만큼 더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노력해서 일단 2개월을 줄이는 쪽으로 했고, 2021년도 평가 개선 사항은 이미 보고했던 것처럼 2가지입니다. 이용자 권익보호와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여성간부직 고용비율을 반영한다는 것이고, 홈쇼핑의 소비자 피해구제 비율 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에 방송이 보다 사회적인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쪽으로 기대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방송평가위원장으로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신 김창룡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의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여성간부직 고용비율 신설과 방송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홈쇼핑 피해구제 조치건수에서 피해구제 비율로 변경한 것, 방송평가 결과 공표를 10월로 예년보다 앞당긴 것은 향후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평가자료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 받는 자료는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평가하게 되는데 방송사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2005년부터 방송프로그램 시청자 평가지수 조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채널의 흥미성, 다양성, 유익성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노력에 부합하는 항목으로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7개 항목에 대해 좀 더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먼저 2021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마련하시느라 김창룡 위원님과 사무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간 결과 발표 시기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사무처에서 많이 노력해서 평가와 발표시기를 상당히 앞당긴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무처와 해당 방송사업자들께서는 변화된 일정에 맞춰서 평가가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제고하고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2022-09-041)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

-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방송법」을 위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한 이유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EBS에 대해 같은 법 제85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안)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배경 및 주요 경과입니다. 조사 배경은 EBS ‘머니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시청자 상담 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되어 시청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작년 8월 실태점검을 하였고, 9월 30일 사실조사 통지 후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EBS로부터 서면자료를 제출받았고, 작년 11월에 EBS와 협찬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1일 시정조치(안) 사전통지를 하고 피심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사실입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머니톡’ 방송프로그램 일반현황입니다. 피심인은 2020년 4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EBS1TV 채널을 통해 ‘돈이 되는 토크쇼 - 머니톡’ 프로그램을 총 26편 제작·방송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당시 2021년 5월까지 방송 예정이었으나, 외부 지적에 따라 2020년 10월 24일 편성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2020년 7월에는 부산·경남지역 민방 KNN과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총 14편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방송내용입니다. 방송은 ‘생활 속 새는 돈 찾기’

형식으로 기획해서 생활 재테크 상식을 소개한 이후 스튜디오에 출연한 시청자의 보험 현황을 소개하고, 보험 설계사가 가입 중인 보험의 문제점, 중복 여부 등을 설명하면서 출연자의 보험을 재설계하고 보험정보를 전달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송에 출연한 보험설계사 3인 중 2명은 협찬사 소속이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피심인 행위사실입니다. 피심인은 2020년 2월 19일 계약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해서 법인보험대리점인 키움에셋플래너(주)와 협찬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찬계약에는 EBS는 총 52편의 방송을 제작하고 방송 시에는 “협찬사”의 협찬사실을 고지하고, 시즌1(26편), 시즌2(26편) 그리고 시즌2가 시작되기 전에 4주간 재방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외 상담DB 확보 등 협찬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협찬사는 협찬금 26억원을 EBS에 지급하는 조건이 협찬계약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주)는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전화상담 및 민원처리,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의 개인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청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과정입니다. 피심인은 프로그램 방송 도중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EBS홈페이지와 콜센터 전화번호’를 회당 4~5회 노출하여 방송하였고, 진행자 멘트를 통해 전화 상담을 안내하는 등 시청자에게 보험 상담을 권유 하였습니다. 상담 전화번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방송 중 안내되던 상담 콜센터 전화 (1833-5590)는 ‘머니톡 콜센터’라고 안내하여 프로그램 제작주체인 피심인이 운영하는 콜 센터인 것처럼 방송하였으나, 협찬사인 키움에셋플래너(주)가 개설한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상담은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에 따라 협찬사인 키움에셋플래너(주) 소속 상담사가 응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4일 방송분에 대해 피심인의 자체심의 과정에서 ‘상담 전화번호가 협찬주와 관련되거나 상담자의 인적사항이 협찬사에 전달되어 영업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2020년 9월 7일 전화번호를 피심인이 개설한 전화번호로 변경하였으나 시청자 상담은 여전히 키움에셋플래너(주) 소속 상담사가 응대하였습니다. 전화상담 시 시청자 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과정입니다. 상담신청한 시청자 정보는 민원처리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키움에셋플래너(주)가 EBS를 대리하여 수집하였고, 동시에 이를 피심인이 동 사에게 제3자 제공하는 방식으로 키움에셋플래너(주)에 시청자 정보가 제공 되었습니다. 키움에셋플래너(주)는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청자 정보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였고, 이를 제공받은 보험설계사가 아웃바운드 콜(Out bound call)을 하면서 상담 신청자에게 상담 및 보험상품을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27일부터 6월 21일 전화 상담 시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에는 키움에셋플래너(주)에 제공된다는 사실은 설명하였지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을 불명확하게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시청자 정보 수집 및 3자 제공 동의과정입니다. 피심인은 피심인의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협찬사 키움에셋플래너(주) 배너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자 정보를 수집하고 키움에셋플래너(주)에 제공하였습니다. 피심인은 시청자가 ‘재무상담하기’를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화면에서 키움에셋플래너(주)를 작게 기재하고 있습니다만 ‘재무 관련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제휴사에 제공한다고 모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피심인은

‘머니톡’ 홈페이지의 재무상담하기 부분을 클릭하면 표시되는 상담신청 화면을 피싱인의 서버에서 2020년 9월 16일에는 키움에셋플래너(주) 서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16일에서 10월 8일 동안은 해당 페이지 개인정보 수집관리주체가 EBS인지 키움에셋플래너(주)인지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없게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협찬사에 제공된 시청자 개인정보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24일 동안 전화를 통해 접수된 상담은 20,101건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상담신청이 10,280건으로 총 30,381건의 시청자 개인정보가 수집되었습니다. 키움에셋플래너(주)에 따르면 이 중 4,956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에서는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VI.1에서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VI.2에서는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정보의 제3자 부당제공 행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방송법상 시청자는 공중(公衆)으로 계약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수신 받는 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청자의 해당 프로그램 시청실적,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 신용정보에도 해당되는 ‘시청자 관련 정보’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방송서비스 계약체결 및 제공과정에서 알게 되었는지 여부는 EBS가 방송제작과정에 관여하였고, 시청자가 방송 중 표시된 대표전화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함으로써 취득한 시청자 정보이므로, 상담이 방송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EBS가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3자 제공 행위에 대한 해당여부입니다. 개인정보의 취득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여부,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주)의 관계는 업무 위수탁 관계가 아닌 개인정보 제3자 제공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청자 상담신청을 접수받으면서 시청자 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EBS로부터 키움에셋플래너(주)이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정보를 이용하여 소속 설계사로 하여금 콜백(call-back)을 실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시청자 정보는 피싱인이 수집하여 시청자 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주)에게 제공된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시청자 정보유용 부당성입니다. 2020년 4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협찬사 운영 전화번호임을 밝히지 않고 프로그램명을 내세워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는 콜센터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청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회피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싱인의 홈페이지 게시판 글 중에서 보험상담 취소 등과 같이 상담을 취소하는 시청자 의견이 게시되는 등 시청자 피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를 키움에셋플래너(주)에게 제공 시 2020년 4월 27일 6월 21일까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해 시청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아 舊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9일 개보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보위는 금융상품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EBS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한 키움에셋플래너(주)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위반행위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영업활동 해당여부는 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영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협찬계약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지원받아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로 사용하는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청자 정보의 영업활동 유용

과정의 부당성입니다. EBS는 협찬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담DB 확보 등 협찬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26억원의 제작비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관련 정보를 협찬사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상담 접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 홈페이지를 알려주면서 상담을 유도하는 행위는 특정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 영업 활동을 돕도록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는 방송법상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의 경계를 교묘히 흐린 행위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험 상품 판매 방송은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방송광고는 시간제한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협회의 자율심의를 받은 후에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 상담연락 시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경우 이를 업무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에서 정한 ‘협찬고지’의 정의를 고려할 때 방송사는 제작경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고 협찬주명 등을 고지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나, 협찬주가 영업활동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 DB를 협찬주와 함께 수집하고 이를 부당하게 제공하여 협찬주의 직접적 영업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제작한 것은 시청자 권익보호 의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도록 한 방송법 취지에 반하고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입니다. 피심인은 키움에셋플래너(주)가 금융 상품안내까지 시청자에게 하였는지 여부,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고 소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방송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협찬사가 소속 설계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험 상품 안내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협찬사가 시청자 개인정보를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목적 외 이용이나 재위탁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에게 시청자 정보가 제공되고 상담과정에서 금융 상품안내를 실시한 것은 EBS와 협의없이 이루어져서 사전에 설명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당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EBS에서는 상담DB확보라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원활한 재무상담을 하기 위해 기재한 문구일 뿐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조기종영으로 실제 지급받은 협찬금액은 13억원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피심인이 제공받는 협찬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구성 전반을 살펴볼 때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시청자 DB 수집이라는 협찬사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협찬비를 수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방송법 제85조의2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의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VI.1과 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명하고자 합니다. 피심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첫 화면과 방송 채널을 통해 3일 동안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청자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시청자 정보를 보호하고 이의 오남용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거나 협찬주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3개월 이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만료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징금 부과입니다. 방송법 제85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별표5] 및 방통위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관련매출액은 협찬사로부터 수령한 13억원, 프로그램 광고 매출액 1억 4,500만원, 프로그램 판매금액 2,000만원을 합산하면 14억 6,500만원입니다. 위반일 당시 '과징금 부과기준' 산정기준에 따라 이를 연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은 21억 4,700만원입니다. 부과기준을 입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상담신청한 시청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상품 관련 스팸전화에 시달리는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시청자의 경우 기존 가입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을 가입하는 등 승환계약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시청자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회 및 언론 지적에 따라 피심인이 즉시 방송을 중단하였음을 감안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부과 기준율을 1.2%로 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필수적 조정입니다.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기준금액에서 20%를 가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 조정입니다. 추가적 조정은 추가적 가중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 착수 이전에 자진시정을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20%를 추가적으로 감경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징금은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추가적 조정을 거친 결과 2,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방송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정위와도 협의하였으며,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3월에 시정조치 내용을 EBS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 보고를 받는 내내 도대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EBS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설립목적에 심대하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 방송에서도 하기 어려운 아주 과감한 행위를 했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서 EBS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 기획되고 누군가 중간 결재를 거치고 그리고 최종 결정되어서 시행까지 되었다는 것이 EBS가 이런 일을 하라고 저희들이 수신료를 내는 기관이 아닐 텐데, 그리고 나중에 피심인의 의견도 보면 본인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과징금 2,000 몇 백만원이라는 사실이 어찌하면 행정부에 무력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EBS는 이번 기회에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 반성하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문제제기가 된 것이 2020년, 제작년 10월입니다. 그런데 경과에 보면 2021년 10월에야 비로소 첫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나서 1년 동안 이런 것을 감시·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무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있었던 행위를 2022년 2월에 자막에 무엇을 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감독하고 최종 책임져야 할 EBS 사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아무런 지적 없이 내일 모레 무사히 임기 마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반성해 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방통위 상임 위원으로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미안할 뿐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무처가 단단히 일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 역시 김효재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 과장님은 이 일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히스토리를 모를 수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이 문제가 지적된 지가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 주요 경과에 사실조사 통지 및 자료제출을 1년간 요구하고 있었고, 실제로 EBS 서면자료 제출이 된 것은 2021년 10월 20일부터였습니다.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

- 국회에서의 지적사항은 EBS 머니톡 프로그램과 유사한 시청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었습니다.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현황 실태점검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습니다. 20개사에서 이런 방송이 편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EBS ‘머니톡’ 보고 상담했더니 개인정보 팔아 8만원”라고 미디어오늘에서 10월 7일 방송을 했고, 그다음 날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이와 유사한 실태조사를 하지요?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

- 국회에서 그 당시 이 건에 대해서는 방심위에서 심의하고 방통위에는 유사 프로그램이 있는지 실태점검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국회나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안을 보시면 지금 보고했다시피 일반인들이 봐서도 EBS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외주사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외주사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EBS에 들어왔으며 EBS에서 어떤 식의 게이트키퍼링(Gate Keeping)이 있었는지는 제가 봤을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년간이나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유사 상황이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1년이나 걸립니까?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우리의 귀책사유입니다. 1년간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면자료 제출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

- 관련매출액 자료 확인하는 것까지 다 해서 2월까지 제출받았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리고 현장조사는 1년이 지난 뒤 11월 3일에 가서 현장조사한 것 같습니다. 입법부에서 문제제기하고 언론에서 문제제기하면 그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행정부에서 답변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방통위가 매우 잘못했고 방통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자진 방송 중단했다고 하는데 EBS가 자진 방송 중단했습니까? 언론이나 국회에서 문제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방송을 중단했지요. 개인적으로는 시청자가 민감한 금융정보 3만여건을 EBS와 협찬주의 영업활동을 위해 악용했다는 본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과징금을 비롯한 시정조치가 매우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정명령에 따라서 3개월 안에 업무처리 개선방안을 조치해야 하는 만큼 이번 본 위원회에서 EBS 자체 내부 처리 결과와 향후 재발방지책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2가지를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EBS가 이 내용을 알고 난 뒤 자체 징계위원회가 열렸는지, 자율감시제도가 EBS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주제작사(주)토마토미디어에서 제작한 것을 EBS에서 방영했는데 이런 외주제작사가 들어올 때 EBS 내부에서는 어떤 형태의 게이트키퍼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

- 예,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 때문에 전수조사하느라고 늦었다는 보고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만 하라고 했습니까? '머니톡'의 이런 부당한 방송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근본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

- 예, 국감 과정에서는 있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일의 우선순위는 잘못된 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해야지, 국회에서 전수 조사하라고 해서 방통위가 전수조사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사 전수조사하라고 하더라도 방통위는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국회 지적사항으로 전수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수조사하느라고 결과 처분이 늦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있었습니까? 방송법을 어겨서 과징금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

- 예, 협찬 위반이나 다른 경우로도 과징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은 방송심의규정 위반행위이지 않습니까?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

- 예, 시청자 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처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

- 예.

○ 김 현 상임위원

- 협찬이나 광고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방송에서 잘못해서 과징금이 나간 첫 사례입니다.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EBS가 좋은 평가를 받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학교교육 그다음에 평생교육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안에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방송정책국, 방송기반국, 이용자정책국이 있는데 항상 이용자와 시청자들에게 불편과 불만이 제기됐고, 또 현행법을 어겼을 때 사무처는 결과 처리를 항시 전수조사를 통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무처장님께서 프로세스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들이 의제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의제를 정하고 그 의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통해 의결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적어도 2020년도에 지적된 내용이 2022년도에 결과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방송시장조사과에서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종합해 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과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국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한 번일 수 있고 해당국에서는 두 번일 수 있지만 전체를 종합하면 제5기 하반기에 돌입하고 있는데 상반기 안에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종합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한 프로세스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보험사가 영업활동을 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늦고 빠르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방송에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해서 방송 본연의 임무, 한국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이라는 본래의 설립목적에 망각하는 행위를 다시는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 사안과 별개지만 지금도 일부 방송에서는 연계편성을 통해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이 문제도 모아서 모니터를 해서 경고할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모니터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언론에 지난 2020년 4월 9일과 4월 20일에 있었던 채널A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사건이 다시 재조망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현재 진행되는 언론보도와 위원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르면 EBS의 설립목적은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무와 공익에 앞장서야 할 EBS가 불법행위를 자행해서 오늘 이렇게 시정조치를 받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송을 통해 입수된 시청자 정보를 협찬사에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한 행위는 명백히 방송법상 금지행위이고, 공영방송사라면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처리가 늦었지만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설립목적 및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수하는 계기로 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사업자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 동의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김창룡 상임위원**

-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데 동의하고, 이 문제는 EBS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방통위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전제로 하더라도 도대체 이 사안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사무처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적어도 위원들에게는 그 자초지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3월 2일에 개최하되 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0분 폐회 】